

서울특별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9. 22.
북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9.14. 김윤정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.9.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7.9.22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,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,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마포구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2) 공교육 혁신사업, 학교-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업 등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(안 제4조)
- 3)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4)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(안 제6조)
- 5)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(안 제8조)
- 6)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2017년9월14일 김윤정 의원의 대표발의 및 8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2017년9월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,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,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.

○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,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

에서 개인·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·관·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, 운영협의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.

○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욕구 충족은 기존의 학교교육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마을, 사회 각 부문이 함께 할 때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, 학교 역시 교육과정의 심화와 영역의 확대 등으로 교과 외 영역으로의 기능분담이 적극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.

따라서 학교의 역할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향후 흥대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문화예술인 단체와 역량 있는 마을공동체 등 성숙한 교육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, 유기적인 민·관·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정, 학교, 마을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